

제 1151 호
1985. 8. 3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염 보 원
편집인 : 공 보 관 이 광 우
전 화 : 731-6111-3
인 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 화 : 735-3337

시 보

차 례

◎ 고 시

- 제 525 호 도시계획시설 (주차장) 지적승인 2
제 526 호 돼지고기 연동가격 고시 2

공											
백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1430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525 호

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732 호('84.12.4)로 시설결정된 우력서관내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 1항 1호 나목 규정

○ 시설조서

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 12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 6조 1항 1호 나목 규정의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및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8. 3

서울특별시장

구분	시설명	위치	규모	비고
신설	주차장	강남구방배동 2434 일대	15,000㎡	

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. 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526 호

돼지고기 연동가격고시

최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규정(농수산부 고시 제 85-18 호, '85.4.18)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

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5.8.3

서울특별시장

1. 돼지고기 연동가격
돼지고가(청육 500g당) 1,600 원
2. 시행일 : 1985.8.6 부터